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의안 번호	882
----------	-----

제출일자 : 2013. 1. 17

제출자 : 달성군의회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리 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객 유치 지원(안 제5조)
- 나. 관광사업 보조금(안 제7조)
- 다. 관광 안내소의 설치 및 문화관광(안 제10조)
- 라. 셔틀버스의 운영(안 제21조)
- 마. 지역 특산품의 홍보(안 제2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5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4)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13. 1. 17 ~ 2013. 2. 6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 (5)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광진흥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5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달성 길라잡이”란 군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축제,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6. “군 관광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란 군의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 축제장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에 따라 선정한 운행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7. “이용자”란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순환관광버스 운영사업
4. 달성 길라잡이 양성 및 운영사업
5. 관광종사자 교육 및 연수사업
6.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7. 지역 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8.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관광객 유지 지원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군수는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항) 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 2.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7조(보조금) ① 군수는 법 제76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수령하고자하는 관련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는 별지 제1호~제6호 서식을 행사 전 군수에게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장 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달성길라잡이의 운영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광안내소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2조(관광안내소 업무)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광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관광안내소 및 관광홍보관 관리·운영
2. 관광객 유치사업
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4. 관광종사원과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 기념품 또는 사진 등 공모전 개최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축제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셔틀버스의 운행
8. 그 밖에 관광 여건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사전승인) ① 제13조에 따라 관광안내소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안내소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안내소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리안내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달성 길라잡이의 운영) 군수는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달성 길라잡이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달성 길라잡이의 직무)①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 ②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 ③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 ④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활동비 지급 등)① 달성 길라잡이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달성 길라잡이에게 관내 관장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달성 길라잡이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표식)① 군수는 달성 길라잡이에게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 ② 달성 길라잡이가 제17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포상) 군수는 문화관광 해설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달성 길라잡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5장 셔틀버스의 운영

제21조(셔틀버스의 운영) 군수는 법 제48조의5에 따라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 ① 셔틀버스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군 산하 기관 또는 출연 기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3.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단체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셔틀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22조(운행노선) 셔틀버스 운행노선은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노선으로 한다.

제23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문화유적지·관광지·체험시설·지역축제장을 이용하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한다.

제24조(이용료)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따라 실비징수를 할 수 있다.

제25조(셔틀버스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내수칙을 충분히 습득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셔틀버스 이용 중 차량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목적 외 운행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운행 목적 외에 셔틀버스 운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6장 지역특산품의 홍보

제28조(지역특산품의 홍보) 군수는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29조(제공대상) 군수는 지역특산품의 홍보를 위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나 단체에 대해서 지역특

산품을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용 농·특산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협의를 및 교류 등을 위해 다른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
2. 업무협의를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다른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
3.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
4. 군에서 생산한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
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0조(무상제공의 제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무상제공의 범위는 「행정안전부 공무원행동강령」을 따른다.

제31조(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의 선정) 군수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구매품목을 필요시 선정한다.

제32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문화체육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7호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사용신청) ① 홍보용 지역특산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서식 제8호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홍보용 지역특산품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실·단·과·소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34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지역특산품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지역특산품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
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1]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 통보서

 신고여행사

여행사명		대표자	
주소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연락처	☎ :		FAX :

 관광계획

구분	관광일시	관광객수	상품명 (주요관광지)	인솔자		비고
				성명	연락처	
당일						
1박2일						

위와 같이 달성군 단체관광을 실시하고자 사전여행계획을 제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광일정표 1부

20

신청인 : 여행사 대표 (인)

달성군수 귀하

[서식 2]

단체관광객 유치 기념품 신청서

여행업체 현황

여행업체명		대표자	
주소			
여행업체 등록번호		등록년월일	
전화번호		FAX	

여행내역 및 기념품 신청(청구)

(단위 : 원)

연번	구분	여행 일자	여행 인원	차량 번호	기념품 신청(청구)	
					차량대수	기념품 수령 장소
계						
1						
2						

※ 여행사 관계자 포함(단, 달성군 현지에 동행한 직원으로 한정 ex) 기사, 가이드 등)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신청인 : 여행사 대표

첨 부 : 1. 여행일정표 사본 1부

직인

2. 달성군 주요 관광지 방문 확인서, 달성군 숙박시설 이용 증빙서류, 체험관광 확인서, 참달성 구매 영수증 또는 주유 영수증, 달성군 지정 식당 이용 증빙서류 중 2개 이상 제출(신용카드 영수증 또는 숙박 확인서, 이용확인서 등)

3. 여행업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증) 1부

4. 참가자명단 또는 여행자보험 가입증서 사본(철도상품 25명미만인 경우)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3]

달성군 주요 관광지 방문 확인서

□ 방문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 관 광 지 :

□ 방문인원 : 명

위와 같이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군 부 청 장 성명 서명

연 락 처 :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4]

달성군 숙박 확인서

방문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숙박업소명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번지

숙박인원 : 명

위와 같이 숙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숙박업소명 대표 서명

연 락 처 :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5】

달성군 체험관광 확인서

방문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체험관광장소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번지

참여인원 : 명

위와 같이 체험관광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농 가 명 대표 서명

연 락 처 :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6]

달성군 지정관광지 확인서

방문일시 : 20 년 월 일 시간 :

지정관광지 :

○ 소재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 번지

참여인원 : 명

위와 같이 지정 관광지에 방문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확 인 자 : 대표 서명

연 락 처 :

달 성 군 수 귀하

[서식 8]

<p>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신청서</p>			
<p>수 신 : 문화체육과장 제 목 :</p>			
<p>신 청 부 서</p>	<p>○○○○과 인수자 ○○○ 사용일시 :</p>		
<p>농·특산물 종류</p>		<p>수 량</p>	<p>포 / kg (kg) set set</p>
<p>사 용 목 적</p>			
<p>상기와 같이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신청하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부서명 : 부서장 : (서명)</p>			

참고 1**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관광진흥법 제48조의5(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